

# 경기력향상금 지급규정

2024. 8. 29.

대한육상연맹

# 경기력향상금 지급 규정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육상선수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력향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 1) 기록 경기력향상금

본 연맹이 인정하는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수립한 기록

#### 2) 메달획득 및 입상 경기력향상금

- (1) 올림픽경기대회
- (2) 세계선수권대회(실외/실내)
- (3) 유니버시아드대회
- (4) 아시아경기대회
- (5) 아시아선수권대회
- (6)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단,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는 메달획득에 한한다.

#### 3) 위에 명기하지 않은 유명국제대회에서 메달획득 시나 특별한 기록을 경신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 경기력향상금을 줄 수 있다.

### 제 3 조 (기록인정)

#### 1) 이 규정의 적용대상 종목은 다음과 같다.

##### (1) 기록경신 : #별표 1의 종목 총50종목

(남자 25종목, 여자 24종목, 남자.여자 혼성 1종목)

##### (2) 메달획득 및 입상

- ① 제2조 2항에 적용되는 대상 범위의 대회로서 동 대회에서 시행되는 육상 전 종목
- ② 세계실내선수권대회 종목은 실외대회에서 진행하는 종목에 한함

#### 2) 국제육상경기연맹 기록 인정 규정에 준함.

## 제 2 장 경기력향상금 지급

제 4 조 (경기력향상금 종류) 경기력향상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대회 입상 경기력향상금(제2조 2항 대회 적용)
- 2) 기록갱신 경기력향상금
  - (1) 세계신기록
  - (2) 아시아신기록
  - (3) 한국신기록
  - (4) 부별한국신기록
  - (5) 국제대회 본인 최고기록(PB) 갱신

제 5 조 (경기력향상금 지급 기준액)

입상, 기록갱신 경기력향상금은 별도로 정하는 포상금지급 기준에 의한다.  
(별표 2 참조)

제 5 조의 1 (경기력향상금 지급 대상)

1) 지도자

(1) 대표코치 : 대한육상연맹에 추천하여 대한체육회에서 승인한 지도자 단, 자체운영 대표코치는 포함한다

(2) 소속지도자(감독 및 코치)

정부 및 대한육상연맹에서 발급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자 및 실제 지도를 한 실적이 있거나 현재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에 한하여 소속지도자로 인정함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관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발굴지도자

본 규정 4조 1) 2) 항에 해당하는 대상 선수를 최초로 발굴하여 일정기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지도자

2) 선수

본 연맹에 등록된 선수로서 본 연맹이 인정하거나 승인하는 대회에서 기록 갱신 및 메달을 획득한 선수

제 6 조 (지도자)

1) 지도코치

대표선수의 기록수립 시 지도자 경기력향상금은 연맹에서 공채한 대표코치(50%)와 소속코치(40%) 및 발굴코치(10%) 에 한하여 비율 100을 기준으로 50:40:10 으로 지급한다.

- 2) 지도코치는 대한육상연맹에 등록된 지도자에 한한다

제 7 조 (경기력향상금 지급방법) 경기력향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 1) 선수 경기력향상금  
선수 개인별 지급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불 지급하며 3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2) 코치 경기력향상금  
코치 개인별로 일시불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연맹의 경기력향상금 재원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선수 경기력향상금 지급기준)

제2조, 5조에 의하여 경기력향상금을 지급하되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1) 동일인이 동일대회 기간 중 1개 종목에서 2개 이상의 신기록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2개이상 기록 중 최고기록에 해당하는 기록경신 경기력향상금 만 지급한다.  
단, 기록경신과 메달획득이 중복될 때는 두 개의 경기력향상금을 비교하여 많은 쪽의 경기력향상금을 지급한다.
- 2) 동일대회 기간 중 1개 종목에서 1인 이상이 신기록을 수립하였을 경우 **2위** 부터는 신기록 경기력향상금의 60%, **3위**는 40%, **4위** 이하는 20%로 차등 지급한다.
- 3) 단체경기(릴레이) 종목의 메달 및 신기록 경기력향상금은 해당종목 선수 경기력향상 금액의 100%를 개인별로 각각 지급한다.

제 9 조 (지도코치 경기력향상금 지급기준)

지도코치 경기력향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메달포상과 한국신기록 포상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 1) 메달획득포상은 지도코치에 대한 경기력향상금을 선수 지급금액의 50%로 지급한다
- 2) 한국신기록 포상은 선수경기력향상금 지급기준 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도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 3) 단체경기(릴레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 한다

구 분	선 수	지도자
릴레이 종목 (4x100mR, 4x400mR)	세계연맹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 %를 4명에게 각각 지급한다 (4인기준)	4명선수 지급총액의 50%를 대표코치와 소속코치에게 50:50으로 지급한다 (메달포상은 위 내용의 50%만지급)
Mixed Relay (4x400mR)	정액제로 5백만원 (지도자1인 포함)	

- (1) 선수층에 입촌한 대표선수의 기록수립 시 지도자 경기력향상금은 대표코치 와 소속코치 비율을 50:50 으로 균등 지급한다  
단, 소속지도자 지급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제5조 1의 1항 1호의 대표코치가 없는 경우 소속코치 지급분(50%)만 지급한다
- (3) 릴레이경기는 본 연맹에서 공식 파견한 대회에 대표코치에 한한다
- (4) 릴레이경기 대표코치 지도기간은 본 연맹에서 공식 파견한 대회 및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대표코치 지급분에서 1개월 이상은 100%, 30일 미만은 50%만 적용한다  
(소속지도자는 1인 5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4)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 참가 시 에도 1)항과 같이 균등 지급한다
- 5) 메달획득 경기력향상금과 신기록 경기력향상금이 중복될경우 제8조 1항에 준한다.

#### 제 10 조 (기 타)

- 1)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하여는 경기력향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육상 발전을 저해한 선수 및 지도자
  - (2) 경기력향상금지급 목적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선수 및 지도자
  - (3) 기타 심의에서 제외키로 하는 자
- 2) 지급 지침에 관한 해석은 스포츠공정위원회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 제 1 조 (경과조치)

- 1) 국내신기록이 수립되는 종목의 기록기준은 그 신기록 수립시점으로 한다.
- 2) 신설되는 종목은 인터발 기간을 설정하여 대회 결과를 토대로 기준기록 설정후 적용함.

- 3) 한국신기록 경기력향상금은 본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할 경우 선수 와 지도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 (릴레이는 본 규정 9조에 따른다)

제 2 조 (시 행)

본 규정은 2016. 10. 6일 제2차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 행)

한국신기록 경기력향상금 부분은 2020. 6. 11일 제2차이사회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7.)**

제 4 조 (경과조치)

- 1) 제9조 Mixed Relay 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별표 2 기록경신 경기력향상비를 지급하고 2025년 1월부터 타 릴레이 종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기력향상금을 지급한다
- 2) 제4조 (4) 부별한국신기록, (5) 국제대회 본인 최고기록(PB) 경신에 대한 경기력향상금은 2024년 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3) Mixed Relay와 부별 한국신기록에 대한 경기력향상금 지급은 대한육상연맹 주최대회에 한한다
- 4) 국제대회 본인 최고기록(PB) 경신에 대한 경기력향상금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 및 아시아선수권대회(주니어, 청소년 포함)에 한한다
- 5) 별표 2의 2025아시아선수권대회는 대회 종료일자와 함께 종전 경기력향상금 지급금액으로 회귀한다
- 6) 별표 2의 남자 100m(9.99이내)기록과 믹스릴레이 올림픽과 실외세계선수권대회 결승(8위)진출에 대한 경기력향상금은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7) 별표 2의 남자 100m(9.99이내)기록에 대한 경기력향상금 지급은 본 연맹이 직접 파견하는 국제대회와 본 연맹이 주최하는 국내개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 한한다

제 5 조 (시 행)

본 규정은 2022. 4. 27. 제2차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시 행)

본 규정은 2024. 8. 29. 제6차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여 신기록 종목 기준표

순	남자종목	여자종목	비고
1	100m	100m	
2	200m	200m	
3	400m	400m	
4	800m	800m	
5	1500m	1500m	
6	5000m	5000m	
7	10000m	10000m	
8	3000mSC	3000mSC	
9	110mH	100mH	
10	400mH	400mH	
11	높이뛰기	높이뛰기	
12	장대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13	멀리뛰기	멀리뛰기	
14	세단뛰기	세단뛰기	
15	포환던지기	포환던지기	
16	원반던지기	원반던지기	
17	해머던지기	해머던지기	
18	창던지기	창던지기	
19	20kmW	20kmW	
20	35kmW	-	
21	10종경기	7종경기	
22	4x100mR	4x100mR	
23	4x400mR	4x400mR	
24	하프마라톤(21.0975Km)	하프마라톤(21.0975Km)	'20.6.11신설
25	마라톤(42.195Km)	마라톤(42.195Km)	
26	4x400m Mixed Relay		'22.4.27신설

(별표 2)

## 경기력향상금 지급 기준액

1. 메달획득 경기력향상비

구 분		현재		비고	
		선 수	지도코치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	2억원	1억원	
		은메달	1억원	5천만원	
		동메달	5천만원	2천 5백만원	
세계선수권 대회	실외	금메달	1억원	5천만원	
		은메달	5천만원	2천 5백만원	
		동메달	2천만원	1천만원	
	실내	금메달	5천만원	2천5백만원	
		은메달	2천5백만원	1천2백5십만원	
		동메달	1천만원	5백만원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주니어선수권 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3천만원) 2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	아시아경기대회는 금메달만 차등지급
		은메달	1천만원	5백만원	
		동메달	5백만원	2백5십만원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3천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7백5십만원	( )금액은 2025년까지 한시적운영  (대회종료이후 총전과동일)
		은메달	5백만원	2백5십만원	
		동메달	1백만원	5십만원	



## 2. 기록경신 경기력향상비

구 분			현재		세계연맹 포인트점수	비고
			선수	지도코치		
한국 신기록	트랙 필드	골드	2 천만원	2 천만원	1200점 이상	세계연맹 기록에 대한 랭킹포인트 점수를 근거로 기준 설정함
		A	1 천만원	1 천만원	1199점 미만	
	릴레이	위와 동일	세계연맹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 %』를 4명에게 각각 지급한다 (4인기준)	4명 선수지급총액의 50%를 대표코치와 소속코치에게 50:50으로 지급한다 (메달포상은 위 내용의 50%만 지급)	위와 동일	
아시아신기록			3 천만원	1천5백만원		
세계신기록			1 억원	5 천만원		
부별한국 기록 (초.중.고.대.일)	트랙.필드.경보	2백만원	1백만원	한시적운영 (현 집행부 임기까지) 대한육상연맹 주최대회		
	마라톤 (풀코스) 경보 (35Km)	5백만원	1백만원			
국제대회 본인 PB경신 (중.고.대.일반부) KAAF에서공식파견한대회만적용		1백만원	-			
남자 100m (9초99이내)		2억원	1억원			
릴레이종목결승진출 (실외세계선수권/올림픽)		1억원	5천만원			
믹스릴레이		4백만원	1백만원			